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1.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서 설정됩니다.

3.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 및 권리·의무 】

본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기관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쌍방이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 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②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대리인)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간과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시 · 군 · 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률

구분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9%, 6%
기타 의료수급권자	6%
기초수급권자	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33,460	30,980	28,590	27,300	25,990	25,990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년 1월 1일 기준)

3.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비급여 : 주야간보호 이용 중 발생하는 식사비(중식 1식 4,500원, 간식 무료 제공), 석식 1식 4,000원(이용 희망자에 한함), 성인용 기저귀 등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와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

② 계약된 서비스이용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이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이상 등 신변 변동사항 및 계약서의 내용과 기재사항이 변경이 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④ 이용자가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의무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즉시 해제

이용자가 사망한 때는 그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① 이용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때

② 이용자가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③ 이용자의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 이용자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⑤ 이용자가 기관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⑥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⑦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계약해제 처리 된 후 기관과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